

일하는 부산시민의 행복추구

부산노동권익센터

수신자 부산광역시청 디지털경제혁신실 일자리노동과 산업안전팀장

(경 유)

제 목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홍보 협조요청

1. 행복한 부산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노동권익센터 2026년 사업인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유관 단체 공문 및 홍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명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지원	
사업 목적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제거를 위한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u>7월 30일(목) 18시까지</u>	<선정안내> 8월 7일(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전화 안내
지원 내용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후, 환경개선지원(최대 175만원)	
지원 조건	10인이하 소규모(제조업) 사업장	
	세부일정은 부산노동권익센터와 개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	
신청 서류	신청서, 청렴이행각서, 정보활용동의서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부 성지민 070-4445-2873(직통)	

< 협조요청 사항 > ○ 구군 내 업체 홍보 독려

붙임. 첨부1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 안내 1부. 끝.

부 산 노 동 권 익 센 터 장

수신자 : 부산광역시 16개구군청 일자리노동과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담당 성지민 대리

사무국장 김원영

센터장 석병수

문서번호 노동안전부 26-07-01

시행일자 2026.07.13.

접수

우 472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 양정센텀빌딩 3층

전화 051) 852-1500, 1600

전송(Fax) 051) 852-1900

대표 email admin@bslabors.or.kr

공개

26년도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2차)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부산 소재 소규모사업장의 회복지원 및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 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참여 업체를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02월부터 12월까지
- 사업목적: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노동자의 작업관련성 직업질환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여 소규모사업장 취약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8개 사업장)
 - 부산소재 소규모(고용노동자 10인 이하)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필수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육해요인조사 대상 업체로 측정/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

○ 지원조건

- 현장노동자 인터뷰 및 작업안전보건체크리스트 작성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후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지원

○ 지원내용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육해요인조사, 업체별 최대 175만원(부가세 포함)
(지원금액 외 업체부담 없음, 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 *측정비용 별도지원

○ 개선 지원 범위

-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 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등
- 미끄럼·넘어짐 방지, 보호구 구입 등
- ※ 사전면담을 통해 나온 개선과제 10% 이상 반영

3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 제출서류

번호	신청 시 제출서류	비 고
1	사업신청서 (총 2장)	신청업체
2	청렴이행각서	
3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사업장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구분	자격요건
부산소재 사업장	○ 뿌리사업 사업장 우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범위를 기준으로 함) ○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소재가 부산인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부산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지원제외 대상기업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 그 외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부터 **7월 30일 목요일 18시 서류접수 마감**
- 접수방법: 부산노동권익센터 방문, 메일, 팩스
 - 방 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 3층
 - 메 일: no_an@bslabors.or.kr / 팩 스: 051-852-1900
- 심사 전 사전 조사 방문: 방문 일정 사업장별 개별 조율
- 결과안내: **8월 7일 금요일**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 사업장 개별 연락
- 문 의 처: 부산노동권익센터 담당자 성지민 **070-4445-2873**(직통)

5 신청접수 및 추진과정

추진단계	주요내용
모집공고	• 사업장 모집 및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서 검토 및 평가
↓	
사업장 사전 조사 방문	• 신청 내용 및 사업장 노동형태/환경 사전 확인
↓	
선정평가 결과통보	• 선정 후 개별 통보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연락)
↓	
사업진행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안전보건체크리스트 / 사업장 개선과제 선정 • 개선계획에 따른 지원금 집행 → 결과확인
↓	
사업종료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서류 접수 후, 사업장 방문 내용

회차	내용	기관
1회	사업장 예비조사	부산노동권익센터 담당자

*사업 선정 시, 사업장 방문 내용

회차	내용	기관
1회차	안전보건체크리스트, 사업장 예비조사	부산노동권익센터, 측정 또는 조사 기관
2회차	측정 또는 조사	
3회차	측정결과 안내 및 설비개선	부산노동권익센터/설비업체